

한국 경찰 범죄현장 출동 시 장비착용 개선방안

Improving Equipment Wear in Korean Police Crime

정 지 덕* · 김 영 현** · 김 성 철***

Jeong, Ji-Deok · Kim, Young-Hyun · Kim, Sung-Chul

요 약

한국도 더 이상 총기안전지대가 아니며, 강력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신체 ·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면서 무기 사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경찰관 장비에 대한 개선점이 필요하다. 장비에 대한 지급이 미흡한 시점에서 경찰관의 안전과 치안유지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장비에 대한 보급과 착용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경찰 출동차량에 반드시 방탄복, 방검복, 방검장갑, 안전헬멧 등을 필수 배치해서 범죄현장에 대처해야 한다.

keywords : 경찰관, 경찰장비, 순찰차량, 범죄현장, 강력범죄

1. 서 론

한국도 더 이상 총기안전지대를 무색하게 만든 사건 2015년 2월 27일 경기 화성 엽총 총기난사 사건, 2016년 10월 19일 오패산 터널 총기난사 사건에 출동한 경찰관이 방탄복, 방검복 등 보호 장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아 참변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경찰관은 근무 시 외근근무 조끼를 착용하고 근무하며 출동 시에도 착용하는데 외근조끼는 보호기능이 전혀 없으며, 방탄복 착용과 관련한 출동 매뉴얼도 없었다. 2016년 5월 19일 고속도로에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경찰이 쏜 실탄에 맞은 사건 등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경찰관의 총기사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만 높고, 경찰관의 안전에는 관심이 없다. 따라서 경찰관은 총기대응보다는 경찰장비를 이용한 범죄 대응이 필요하다.

2. 본론

강력범죄는 흉기사용 등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반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1차적으로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여 2차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를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경찰은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치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경찰은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 범죄현장에 출동하는 외근경찰은 '2인1조' 근무원칙에 의거 권총, 테이저건의 경우 외근경찰관이 2인중 1인은 권총, 나머지 1인은 테이저건을 분리 휴대하고 삼단봉의 경우 외근경찰관 개개인의 재량에 따라 선택적으로 휴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범죄자가

* 정희원 · 용인대학교 무도학과 교수 hapki@hanmail.net

** 김포대학교 경찰경호행정학과 교수 kasfa690415@kimpo.ac.kr

*** 김포대학교 경찰경호행정학과 교수 ccc@korea.com

무기를 소지하고 강력하게 저항하면 진압하기 어려우며 범죄자를 단독으로 직면하는 경우 경찰관이 제압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현재 범죄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에게 권총, 테이저건, 최루액, 삼단봉을 착용하는 법안이 진행하고 있으나, 한편으론 경찰관의 과잉무장으로 인한 과잉진압을 우려하는 경우도 있다.

표 1 지구대 및 파출소 외근 경찰관 위해성 경찰장비 휴대 규정

구분	장비	휴대규정
필수 휴대장비	권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인1조 근무 시 1인은 권총 1인은 전자 충격기 휴대(단, 전자 충격기 부족 시 가스 분사기 휴대) • 단독 근무 시 가급적 전자 충격기 또는 가스 분사기 휴대 • 유연파출소에서 야간에 2인 근무 시 무기고에 권총이 남아 있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2인 모두 권총 휴대(전자 충격기는 순찰차에 1정 탑재, 필요시 사용)
	전자충격기	
	가스분사기	
선택 휴대장비	삼단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 시 휴대
	가스분사봉	

*출처 : 경찰청 2015년도 지역경찰 운영지침

장비에 대한 지급이 미흡한 시점에서 경찰관의 안전과 치안유지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장비에 대한 보급과 착용이 우선적으로 진행되는 시점에 순찰차량은 4차 산업혁명에 맞추어 신속 정확 출동을 돕는 최첨단 네비게이션 장착, 차량 번호 자동 판독기 등의 지급이 시행될 예정이다.

3. 결론

경찰제복은 신체를 보호하며, 체온을 조절하고, 청결을 유지하게 해주는 등 다양한 기능이 있고, 경찰장비는 범인체포 및 도주방지, 범질서 확립, 공공질서 유지, 시민의 생명·신체 보호 등 경찰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며, 경찰관의 무기사용은 원칙적으로 경찰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써 허용하고 있다. 강력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경찰관의 생명·신체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기사용에 대한 과잉 무장, 과잉 진압을 우려하고 있다. 범죄현장은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게 될 급박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112상황실에 접수되어 출동하는 경찰관은 반드시 권총, 테이저건, 최루액, 삼단봉을 착용하고 출동하는 차량에 반드시 방탄복, 방검복, 방검장갑을 배치하고 출동차량 운전원은 안전헬멧을 착용해서 범죄현장에 대처해야 한다.

참고문헌

이훈, 이동률 (2016) 우리나라 외근경찰관 휴대무기 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 경찰의 물리력 사용 연속체를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16(2), pp.9~38.
 정신교, 김준성 (2015) 경찰관 무기사용의 허용범위와 한계, 강원법학, 제44권 pp.755~777
 최용렬, 임유석 (2012) 경찰의 IDS 운영 실태와 위치추적권에 대한 고찰, 경찰학연구, 12(3) pp.199~225